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후 100일을 보내며



이재토 대전안드레아
노인의료복지시설
연희실버 대표

‘벌써 100일이나 지났나?’

원고 청탁서를 받아들고 문득 생각해보니 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정말 100일도 훨씬 넘은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는 얘기리라.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요양시설들은 그 무더운 여름날들을 분·초 단위로 나누어 쓸 정도로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과 인력의 정비, 이미 입소해 계신 환자분들의 장기요양 등급신청, 각종 서식 준비와 보고서 준비 등 지금 생각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 것을 느낄 정도였다. 장기요양보험을 주관하는 건강보험공단측도, 시설인증과 관리감독을 맡은 자치단체들도 벼벽대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차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은 적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관청에서도 확실치 않은 법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적잖은 민원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100여 일을 넘기면서 아직도 약간의 불만, 불편이 없지 않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도 그럭저럭 정상 궤도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작 100여 일 정도에서 제도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처사라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인자라 벌써 그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도 상당할 것 같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후 생긴 요양시설에서의 변화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양시설이 보험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시설 측면에서나 인력 측면에서 팔복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보험적용 이전의 요양시설들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한 법규가 있었음에도 그 법규 적용을 강제 할 만한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 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이 보장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들 특히 일부 개인 시설들은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법인 시설 개인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보험적용사업장이 되고 동일한 시설 · 인력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험 시행 이전에 비해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 인적 여건이 상당히 강화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중요한 변화 중의 다른 하나는 요양시설의 개방성, 접근성의 증대로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점이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의 제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시설의 개방성은 향상될 것이며 개방성의 증대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요양시설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기피시설에서 병원처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떳떳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긍심이 향상된 점을 마지막으로 들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는 그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 사실이지만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일차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제도를 단순한 시간 채우기식이라고 혹평하면서 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양성제도 정도면 요양업무 수행에 충분치 않을지는 몰라도 기본적 필요조건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수년 동안 시설을 운영해 온 필자의 생각이다. 시험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요양보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정도와 요양보호사 지망자들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요양보호사의 국가자격인정제는 지금까지 '간병인'으로 통칭되던 요양인력들에게 전문 수발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서 향상된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생산하는 심리적 기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법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험 시행자의 자격으로 요양시설을 수시로 방문하고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는 요양시설로서 이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담당자도 없지 않지만 사사건건 법규를 들이대며 규제 일변도의 '관리'에 여념이 없는 당무자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심신이 피곤해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본 '규제행정'의 표본은 이른바 '식재료비'라는 개념이다.

장기요양수가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고 비급여 항목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고 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 중 '식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명에 의하면 식재료비란 인건비, 수도광열비를 제외한 순순한 식재료 비용으로서 한 끼 당 2,500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 끼 당 2,500원이 기준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가라는 점이다. 이것을 안 지켜도 좋지만 지키지 않는 기관은 실사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500원이 비현실적이다라는 항변에는 요양비에 조리사 인건비와 수도광열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

18

19

20

21

14 | 15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걸음마를 띤 상태로 그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그 끝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은 확실하다.
우리보다 8년 앞서 개호보험을 시작한
이웃 일본도 그동안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해 오고 있다.



시설의 인력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조리사를 '필수'로 변경하여 필수 인력에서 제외시킨 점(2008. 4. 4.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상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문제지만, 강화된 시설 기준이 요양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이다.

2008년 4월 4일 이후 신규 요양시설은 입소자 1인당 23.6제곱미터 넓이의 전용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이 4인 가족 기준 약 85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신체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이나 장년층보다 활동 공간이 더 넓은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온다. 노인복지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칫 요양산업에 대한 심각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2010년까지 요양시설 수용 능력을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지만 범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을 미지수이다. 결국 민간의 투자와 사업 참여가 목표달성을 관건으로 보이는 바, 이것에 대한 해답은 과감한 투자 유인을 유발하는 것이다. 결국 요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 모델의 개선이 요구되는바 현재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의 변화와 개선할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였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걸음마를 띤 상태로 그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그 끝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은 확실하다. 우리보다 8년 앞서 개호보험을 시작한 이웃 일본도 그동안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해 오고 있다.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아기가 보다 튼튼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나기 위한 볼거리같은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고 10여 년의 산고 끝에 얻은 귀한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연구 정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